

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40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0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우리시 맥금동 일원에서 온천이 발견되어 온천지구로 지정고시('96. 7.2) 됨에 따라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이용시설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
- 온천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에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기능(제2조)
온천개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과 온천이용시설의 적정한 관리 등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
- 위원회의 구성(제3조)
온천관련 전문가, 온천개발자 및 이용자 대표, 시의회의원, 관계공무원, 기타온천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자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함
- 위원회의 임기(제4조)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함
- 위원회의 운영(제6조)
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것으로 함.

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 2 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

1.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
3.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
4.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터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
5. 온천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의 문제가 있는 사항
6.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또는 구두로 사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

제 3 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으로 한다

1.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
2. 온천발굴자(온천공소유자)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자
3. 시의원
4. 관계공무원(국장급 이상)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

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

⑤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시장은 당해위원과 그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

제 4 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

② 제3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 까지로 한다

제 5 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

제 6 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

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회의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

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

제 7 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

제 8 조(수당 및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받아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

제 9 조(시행규칙) 이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